

# 제 안 요 청 서

- 목 차 -

사 업 명	『신내3-3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사업 희망사업자 모집』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2017. 05.



담 당	소 속	전화번호 / FAX
	도시재생본부 근린재생사업처 공동체주택사업부	TEL. 02-3410-7388 FAX. 02-3410-7373

## 1. 신내3-3 공동체주택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 개요

- 1) 공동체주택 시범사업의 의의
- 2) 공동체주택 시범사업의 유형

## 2. 희망사업자 공모 요강

- 1) 모집개요
- 2) 토지임대 조건

## 3. 희망사업자 선정 평가

- 1) 평가기준
- 2) 평가위원회 POOL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
- 3) 평가위원회
- 4) 희망사업자 선정 평가방법
- 5)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 ※. 제안서 작성안내

# 1 신내3-3 공동체주택 시범사업 사업자 공모개요

## 1) 공동체주택 시범사업의 의의

### □ 공동체주택 추진배경 및 방향

- 공공임대주택 대상자도 되지 않고, 비싼 주택가격으로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서울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 저출산, 고령화, 청년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주거모델
- 특정한 가치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공동거주를 계획하고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모델
- 주택계획 및 관리가 어려운 거주자들을 위해 지원하는 전문 민간임대사업자의 역할 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주거모델

### □ 공동체주택 시범사업의 의의

- 공공토지임대 방식 활용한 공동체주택 성공모델 제시

- 새롭게 시도되는 공공토지 장기임대를 통해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모델 제시
- 특정한 가치나 목적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주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질 사례화

- 다양한 유형의 공동체주택 사례모델 정립

- 육아, 사회초년생, 노인 등 목적별 같은특징의 사람끼리 거주하는 다양한 공동체주택 유형 정립→ 향후 공동체주택 확산시 보완 적용
- 사업추진 매뉴얼 마련 통해 누구나 적용 가능한 공동체주택 확산

## 2) 공동체주택 시범사업의 기본방향

- 대규모 단지형 공동체주택(주거용도+커뮤니티공간)

### 서울주택도시공사 보유 미매각 택지 대상

- ※ 장기 미매각부지 방치로 지역경관 훼손 및 이미지 저하  
⇒ 공동체주택을 통해 경관 향상 및 지역이미지 제고

- 공동목적은 공유하는 규모 있는 공동체주택 공급
  - 공동체 의지 있는 입주자 선정 위해 자체규약마련 및 실행을 입주조건으로 함.
  - 지역공동체 컨셉에 부합하는 커뮤니티 공간
- 지역 환경 고려된 공동체주택으로 지역특화에 기여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고려하여 입주자 모집
- 커뮤니티 공간 개방 유도를 통해 지역거점 공간 마련
  - 커뮤니티 공간은 거주자를 위한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주민에게 개방을 유도하여 지역거점 공간화 및 지역재생 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건축 디자인으로 지역경관 쇄신
  - 지역이미지 쇄신 가능한 다양한 건축디자인 유도(단, 지역경관과의 조화 고려)
- 토지임대 사업자, 공동체주택 입주자 네트워크 구성
  - 공동체주택 민간임대사업자 및 공동체주택 입주자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커뮤니티 형성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 공유
- 공동체주택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 토지임대 정보 제공, 민간사업체, 희망임차인들을 위한 플랫폼 구축

## 2 희망사업자 공모 요강

### 1) 모집개요

- 사업명 : 신내3-3 공동체주택시범사업 토지임대 희망사업자 모집공고
- 사업방식 : 공공토지 임차→ 공동체주택 건설→ 임대·관리·운영
- 대상지 : 중랑구 신내3지구 도시형생활주택용지 3BL

### □ 대상지 입지여건



구분	내용
위치	신내3지구 도시형생활주택용지 3BL (중랑구 신내동 243-14 일원)
대지면적	660m <sup>2</sup>
용도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5층 이하, 건폐율 60%, 용적율 200%)

※ 현재 개발계획 변경 추진(용도 :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 중이며, '17.06월 개발계획 변경 완료 예정

### □ 참가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 주택 및 건축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자.  
단, 선정된 사업자는 당해 공동체주택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등재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함.
- ※ 주택 및 건축관련 사업자 범위

구분	관련법령	비고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5조	
주택임대관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7조	
건축공사사업자 토목건축공사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건축사무소를 개설한 자	건축사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 □ 사업자 선정 절차 및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공고	2017.05.19(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질의응답	-2017.05.29(월) 17:00까지 접수 -2017.05.31(수) 일괄 답변 (공사홈페이지 게시)	질의접수는 이메일( <a href="mailto:per@i-sh.co.kr">per@i-sh.co.kr</a> ) 접수만 인정함.
제안서접수	2017.06.22(목) 14:00~17:00	서울주택도시공사 9층 공동체주택사업부
평가위원회 개최	2017.06.29(목) 14:00~	서울주택도시공사 14층 소회의실
사업자 선정공고	2017.06.30(금)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사업 착공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 계약체결 기한은 사업자 선정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함.
- 2) 상기 일정(계약체결 포함)은 사업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 토지임대 조건

- 토지 임대기간 - 30년 (30년 사용 후 10년 연장 가능)
  - 10년마다 재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임대료 재책정.
  - 토지임대 계약종료 시 원상회복(나대지) 토지반환 원칙

### □ 토지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 토지임대료 -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2」 기준

▶ 공급가격 × 계약 전전월 5년만기 국고채 금리  
※ 부가가치세 별도

- 토지임대보증금 - 월임대료(토지임대료 조정 시점 기준)의 30개월 분  
·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3」 에 따른 전환보증금

○ 토지임대료 조정

- 10년 시점마다 재감정평가를 통해 토지임대료를 재책정하여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조정
- (구)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②항에 의거 최초 2년간 증액 금지, 2년 이후 토지임대료 증액은 최대 연5% 이내에서 자치구지가변동률 및 주택임대료 증액을 고려하여 증액
- ※ 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 최대 연5%

□ 토지임대 조건

- 공공토지임차 → 공동체주택 설계 및 건설 → 임대
- 최초 주택임대료는 시세 이하로 정하고, 주택임대료 증액은 연5% 이내로 제한
- 준공 후 3개월 이내 해당 주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 총 세대수 : 25세대 이하
- 주택면적기준 : 호당 17㎡이상 ~ 60㎡ 이하
- 커뮤니티 공간 확보 의무화
  - 도로에 면한 1층 위치에 호당 3.3㎡이상의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해야 함.
- 공유공간 확보 의무화 : 호당 1㎡ 이상의 공유공간을 확보해야 함.
- 커뮤니티 규약 제정의 의무화
  - 토지임차인은 입주예정자를 대상으로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커뮤니티 규약을 제정해야 함.
  - ※ 규약의 내용에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시설물의 설치,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이 포함되어야 함.
- 커뮤니티 공간의 운영
  - 1층 건물 전면(도로변)에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커뮤니티 공간은 입주민 운영이 우선이며 근린생활시설로 허가 시 사회적 경제주체에 한정하여 임대 가능

※ 사회적 경제주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주거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허가된 공익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 한함) 등을 말한다.

- 근린생활시설 임대 시 임대료 기준은 사전협의 후 계약 시 특약사항에 명기
- 토지임대료 납부현황 임차인에게 고지의무[(구)임대주택법 제20조 6항]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는 토지임대료 납부현황을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함.
- 주택임대계약 조건 및 주택임차인 변경사항, 입주자 관리규약, 커뮤니티 운영계획 및 결과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해야 함.(※ 연 1회 통보)
- 입주자 모집 후 6개월 이내 협동조합 구성 의무화
- 입주 후 오픈하우스 1회 이상 시행 의무화
- 공동체주택 준공 후 6개월 이내 공동체주택 플랫폼 등록 의무화
- 주택임차인 모집 시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
- ※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서울시 정책 변화에 따라 토지임대조건 일부 조정 가능

□ 토지임차인 권한

- 임대토지의 지상에 공동체주택 준공 및 입주지정기간 개시 후, 토지임차인의 원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제6조 및 제7조가 적용되며, 이 때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매수 금액은 건설원가가 아닌 아래금액으로 한다.
  - 8년 이내 해지 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40%
  - 10년 이내 해지 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50%
  - 20년 이내 해지 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60%
  - 30년 이내 해지 시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의 70%
- 토지임차인은 계약기간 내에 건물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토지임대인과 협의 후 주택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음. 단, 재건축에 따른 계약기간변경은 불가함.

□ 토지임대인 권한

- 토지임차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토지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차인이 2년 이상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 그 밖에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토지임차인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면으로 의무이행을 촉구하는 최고를 할 수 있으며, 최고를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지임차인의 의무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 건설공사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사용승인 포함)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임차인이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토지의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 계약 내용과는 다르게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건설한 주택이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공동체주택이 아닌 경우
  - 토지임차인이 임대료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토지임대인이 임차권의 변경사항을 위반한 경우
- 단, 정부, 지방자치단체, 주택재개발조합 등이 공공 또는 준공공을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토지 임대 계약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권의 반환 관련 임차인과 협상 또는 강제수용권 사용 가능

### 3 희망사업자 선정 평가

#### 1) 평가기준

- 평가방법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 공동주택택 관련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안정성이 요구되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준용
- 정량적 평가 점수 및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하여 고득점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2) 평가위원회 POOL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회 POOL 구성

분 야	공동주택택 사업관리	공동주택택 커뮤니티운용	주택관리	지역재생	건축계획	계
평가위원수	2	2	1	1	1	7

※ 후보POOL은 분야별 평가위원수의 3배수로 구성

- 평가위원 선정

분야별 평가위원 후보Pool 21명 중 제안서접수 당일(2017.06.22.) 제안참여자 별로 7명 (공동주택택사업관리 2명, 공동주택택커뮤니티 운용 2명, 주택관리 1명, 지역재생 1명, 건축계획 1명)과 예비후보 5명(분야별 1명)을 포함, 총12명을 추첨케 한 후 구성 분야별 다빈도순으로 7명을 최종 선정. (득표수가 동률인 경우 고령자 순으로 선정)

#### 3) 평가위원회

- 일 시 : 2017.06.29.(목) 14:00
- 장 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소회의실(14층)
- 위원장은 평가위원 7인 중 호선으로 선출
- 제안 설명회
  -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사는 제안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설명은 제안사의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설명의 순서는 설명회 당일 추첨에 의해 결정하며, 시간은 업체당 25분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함.
  - 발표자료는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해야하며, 제안서 이외의 내용은 포함할 수 없다.

#### 4) 희망사업자 선정 평가방법

- 1단계 : 평가위원회 투표에 의한 탈락 업체 선정
  - 2단계 평가대상 업체 선정(4개 업체)을 원칙으로 평가위원별 투표로 탈락 업체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4개 이내인 경우 2단계 심사로만 진행한다.
- 2단계 : 위원별 점수 집계에 따른 선정
  - 1단계 통과된 업체로 2단계 평가를 진행하며, 최종평점 산정결과 최고평점 업체가 2개 이상 나올 경우에는 동점업체끼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재심사
  - 종합평점 산정방법은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평점에 정량적 평가점수를 합한 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종합평점 : (위원점수 계 / 참석위원 수) + 정량적 평가점수
- ※ 정량적 평가점수는 정성적 평가 후 공개한다.
- 종합평점 산정결과 모든 작품이 70점미만이 나올 경우 대상자의 선정 여부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상대평가 배분표(2단계)

참 여 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 - 상대평가 점수배분

구 분	등 급					
	수	우	미	양	가	비 고
평가기준						
점수 환산비율	100%	90%	80%	70%	60%	
점 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계						100
정량적 평가 (20점)	■ 커뮤니티공간 <sup>1)</sup> 면적 (의무면적 대비 전용면적 기준) ※ 의무면적 : 3.3㎡/호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6
		110% 미만	120% <sup>2)</sup> 미만			
		2	4	6		
	■ 공유공간 <sup>2)</sup> 면적 (의무면적 대비 전용면적 기준) ※ 의무면적 : 1.0㎡/호	100% 이상	110% 이상	120% 이상		6
		110% 미만	120% <sup>2)</sup> 미만			
		2	4	6		
	■ 커뮤니티공간지역재생 활용 및 운영주체	미활용	활용(활용 시 운영주체)			6
		(지역주민 미개방)	사회적경제주체 <sup>3)</sup>	입주민		
		0	4	6		
	■ 주택임대사업자 면허 보유기간	미보유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2
0		1	1.5	2		
1) 커뮤니티공간 : 회의실·공부방·육아방·창업공간 등 공동체주택 입주인들이 함께 모여 소통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또는 북카페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역재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단, 출입문이 부착된 밀폐된 공간이어야 하며, 외부 개방 시 총 면적의 1/3이상 회의 등의 용도가 가능해야 함.) 2) 공유공간 : 세탁실·공동창고 등 주택임차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 3) 사회적경제주체 :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호에 따름						
정성적 평가 (80점)	■ 사업계획서	-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 사업관리	- 지역재생 및 지역공동체활성화의 역할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임차대상 및 임차인 모집방법(객관성,공정성 등)				10
	■ 커뮤니티	- 커뮤니티프로그램의 적정성 - 공유공간 활용의 적정성 - (지역)커뮤니티공간 활용의 적정성 - 커뮤니티 공간 개방의 적정성 - 협동조합 구성 계획의 적정성 - 보육형 공동체주택(신내3-4) 연계방안				10
	■ 사업수행능력	- 사업의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 자원조달계획(토지임대보증금,토지임대료) - 임대전략 및 마케팅				15
	■ 지역공동체형 공동체계획	- 공동체를 고려한 건축계획(평면계획 등)의 적정성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 지역공동체를 고려한 입주자 모집 방안 - 입주민과 지역공동체와의 소통 방안				20
	■ 건설사업계획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품질계획의 적정성(친환경,에너지절감 등) - 단위세대설계 적정성 - 건축물외관의 적정성 - LCC(Life Cycle Cost)계획의 적정성				10
	■ 유지관리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				5

※. 제안서 작성안내

1. 제안서 작성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항목	작성방법	비고
1. 제안개요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에 대해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사업 추진 총괄		
가. 사업관리	- 지역재생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역할계획(지역엔커시설활용)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임차대상 및 임차인 모집방법에 대하여 객관성, 공정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한다.	
나. 커뮤니티	- 공동체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커뮤니티프로그램, 협동조합 구성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공유공간 및 커뮤니티 공간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능력	- 사업의 운영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 자원조달계획 및 토지임대보증금, 토지임대료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임대전략 및 마케팅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라. 지역공동체형 공동체계획	- 공동체를 고려한 건축계획(평면계획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지역공동체를 고려하여 지역공동체와 어우러질 수 있는 입주자 모집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 입주민과 지역공동체와의 소통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계획	- 사업추진계획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품질계획의 적정성(친환경, 에너지절감 등)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단위세대설계방향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건축물외관 디자인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Life Cycle Cost계획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 시설물 관리운영계획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2.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A4 종 또는 횡방향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 본문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일 것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작성, 제출된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 및 자료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 서류의 일부로 간주하고 이를 계약기간 내에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음.  
※ 서울시 정책 등에 따라 공사에서 요청하는 경우 협의를 통해 계약내용 조정 가능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함.
-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3. 제출 서류

-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시범사업 희망사업자 응모신청서 1부 제출
- 제안서 15부 제출(세부사항은 상기 제안서 작성안내 참조)
- 제안서 발표 PPT 15부 제출(A4 횡)/파일은 USB로 제출
- 기타서류
  - 주택 및 건축관련 사업자 등록증명서 1부
  - 임대사업자 등록증명서 1부
  - 개략 건축도면(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커뮤니티 및 공유공간 면적 등 개요)
  - ※ 응모대표자 인장 및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구비)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사업 희망사업자)

## 응모신청서

응모등록번호			
응모자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소재지 (우)	e-mail	
<p>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b>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사업 희망사업자</b> 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p> <p>첨 부 1) 주택 및 건축관련 사업자 등록증명서 1부 2) 임대사업자 등록증명서 1부 3) 개략 건축도면(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커뮤니티 및 공유공간 면적 등 개요)</p> <p>2017. . .</p> <p>신 청 인 : (인)</p> <p><b>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b></p>			

응 모 신 청 접 수 증			접 수 인
공 고 명			
응모등록번호			
사무소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